

- 2026 전북특별자치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- 사업대상지(시군) 및 공연콘텐츠 공모

(재)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거리극을 통해
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, 문화·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
「2026 전북특별자치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」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2. 23.

(재)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

1 공모 개요

- (사업명) 2026 전북특별자치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
- (지원기간) 2026. 3 ~ 12월(공연기간: 2026. 4 ~ 11월 / 8개월)
- (선정방법)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선정
- (예산액) 금100,000,000원(금일억원)
 - 시·군별 20,000,000원(금이천만원) 지원 ※ 시·군비 48백만원 이상 의무 매칭
- (지원대상) 도내 14개 시·군 중 지역 특화 공연콘텐츠 제작·운영이
가능하며, 시·군비 매칭이 가능한 지자체
- (지원규모) 5개 시·군(5개 공연콘텐츠)
- (지원내용)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내 대표 관광지에서의 거리예술
공연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지원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지원
- (신청방법) (시·군) 공문 접수 / (사업 수행단체) 방문 접수
- (공고기간) 2026. 2. 23.(월) ~ 3. 12.(목) (18일간)
- (접수기간) 2026. 2. 26.(목) ~ 3. 12.(목) 18:00까지 (15일간, 주말 접수 불가)

2

전년도와 달라진 점

구분	2025년	2026년	
		13회 이하 공연	14회 이상 공연
공연 운영	동일 장소 공연 8회 이상	기존 공연운영 내용과 동일함	횟수 및 장소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
	지역 축제·행사 연계 공연 최대 5회 가능 ※ 동일 축제·행사 연계 최대 2회 가능		
	주말 시간대 상설운영(주 1회 공연) ※ 주 2회 공연 최대 2회까지 인정(주말 1회 필수 운영)		

3

세부 지원내용

구분	내용
사업기간	○ 2026. 3. ~ 12월 (공연기간: 2026. 4. ~ 11월)
사업내용	○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내 대표 관광지에서의 거리예술 상설공연 콘텐츠 제작 및 주말 시간대(주 1회 공연) 운영 지원
지원규모	○ 5개 시·군(5개 공연콘텐츠) 선정
지원기준	○ 시·군당 최대 1개 공연 콘텐츠 선정지원
지원대상	○ 도내 14개 시·군 중 지역 특화 공연콘텐츠 제작 및 운영이 가능하며, 시·군비 매칭이 가능한 지자체
지원금액	○ 총 100백만원 (도비:시군비 3:7 이상 매칭) ※ 시·군비 48백만 원 이상 의무 매칭 - 도비 20백만 원 지원 / 선정 5개 시·군 지원금 균등 지급
운영횟수	○ 시·군별 상설공연 최소 13회 운영 + 통합퍼레이드 2회 참여 - 시·군비 70% 이상 추가 매칭 시, 운영횟수 조정 가능 - 상설공연 13회차 초과 공연(14회차 이상)은 일정 및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※ 통합퍼레이드 미참여 시, 상설공연 1회 추가 운영 및 실행평가 감점
공연장소	○ 각 시·군의 대표 관광지 중 관광객 및 지역민 밀집 지역 - 관광객(관람객)의 방문 접근성, 편의성을 고려하여 장소 선정
공연시간	○ 회 차별 공연 운영시간 : 60분 내외
공연운영	○ 지역 문화자원 기반의 거리공연 상설콘텐츠 개발·운영 - 연극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, 다원예술 등 기반으로 지역별 관광 특성과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공연 ※ 전년도 참여 시·군의 경우, 기존 작품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나 질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○ 상설공연의 지역 축제, 행사 등과 연계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연장 공간 구성, 상설운영 방안, 안전대책 등 세부 운영계획 수립·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혹서기 등 기상상황에 따른 출연자 안전관리 등 위기 대응계획 마련 ○ ESG 경영 관점에서의 공연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예시) (E)공연의상 재활용, (S)사회취약계층 배려 공연, (G)공연 기획·운영에 다양한 이해관계자(지역주민 등) 참여 보장
운영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규 지역 컨설팅(최초 1회 적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 사업에 신규로 진입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·군 대상 공연 컨설팅 진행
관람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거리퍼레이드 특성상 무료공연 원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체험프로그램 추가 운영 시 유료 가능(수입 발생액은 사업비에 반영)
가감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사업에 선정 이력이 없으며, 시·군비 매칭이 가능한 신규지역(5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해당 시·군) 군산시, 정읍시, 김제시, 완주군, 무주군, 장수군, 순창군 ○ 2025년 종합평가 결과, 인센티브-패널티 점수 공모 심의 시 반영(±5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우수 시·군(수행단체) 가점 5점 / 최저 시·군(수행단체) 감점 5점
인센티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6년 종합평가 최우수 시·군-수행단체 인센티브(5점) 부여

4 지원 안내

- (공고기간) 2026. 2. 23.(월) ~ 3. 12.(목) / 18일간
- (접수기간) 2026. 2. 26.(목) ~ 3. 12.(목) 18:00까지 / 15일간 *주말 접수 불가
- (제출서류)

연번	구분	주요내용	양식구분
①	사업계획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4 20매 이내 - 사업신청 개요, 사업이해도 및 프로그램 구성, 프로그램 적합성, 수행단체 전문성, 홍보계획, ESG 경영, 추진 일정, 소요예산 등 작성 ※ 향후 종합(실행)평가는 해당 서류를 기반으로 실시 	지정양식 [서식1]
②	발표자료(PT파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4 15매 이내 - 기획의도, 공연·프로그램 내용, 추진 일정, 참여 인력 구성, 예산, 기대효과 등 요약 작성 	자유양식
③	시·군비 예산확보 계획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정 후 시·군비 미확보 시 선정 취소 및 도비 지원 불가(지급액 환수) 	자유양식 [서식2] 참고
④	공연단체 증빙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 등 공연단체 증빙서류 	-
⑤	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표자 및 실무자 서명 후 제출 ※ 선정 이후 공연 개막 전까지 전 출연진 대상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 필수 이수 	지정양식 [서식3]
⑥	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표자 및 실무자 서명 후 제출 	지정양식 [서식4]

○ (접수방법) ※ 접수 전 시·군·단체 사전협의 필수

구분	시·군	수행단체
접수방법	공문접수 신청 공문과 함께 제출서류 접수	방문접수 제출서류 출력 후, 출력본 제출
제출서류	①사업계획서(1부) ②발표자료(PT파일)(1부) ③시·군비 예산확보 계획서(1부) ④공연단체 증빙서류(1부)	①사업계획서(6부) ②발표자료(PT파일)(6부) ⑤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(1부) ⑥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(1부)
비고	· 공문 내 파일첨부 어려울 시 공문 접수 후 이메일(etoby@jbct.or.kr) 제출	· 접수처: 전북예술회관 3층 예술회관운영팀 (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1) ※ 접수 시 심의위원 번호추첨 진행 예정

※ 시·군, 수행단체 모두 해당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접수 완료

○ 지원 유의사항

구분	내 용
지원총량제	○ 수행 기간 동안 동일 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2026년 문화예술본부(창작지원팀, 교육문화팀, 예술회관운영팀) 공모사업 총 지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제한

○ 지원제한(결격사유)

구분	내 용
성희롱·성폭력 범죄 및 법률 위반 관련 부적격 기준	○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공고일 기준으로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 ○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 및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-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·성폭력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개인 및 단체는 재단 내부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함 - 사업 기간 중 관련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및 사업비 전액 환수조치와 함께 향후 5년간 지원사업 신청 불가
불공정 행위 등 법률 위반 관련 부적격 기준	- 「예술인복지법」제6조의2(금지행위 등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개인 및 단체 - 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제13조(불공정행위의 금지) 및 제35조(재정지원의 중단 등)에 의해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개인 및 단체 -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개인 및 단체 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개인 및 단체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(공공재정 환수법)」 및

구분	내 용
	「보조금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개인·단체 -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임금(사례비)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 및 단체 - 지식재산권(저작권 등) 침해 등의 사유로 법적 분쟁 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은 개인 및 단체

※ 최종 수행단체로 선정된 이후 상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이미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

5 심의안내

① 심의절차

○ (심의위원 구성)

- 도내·외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5명 구성(도내 4명 / 도외 1명)
- 4배수 후보군 구성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심의위원 확정

○ (심의과정)

사전 행정검토	전문가 심의	논의 및 최종 선정
제출서류 적격 여부 및 가감점 적용사항 확인	서면심의(제출서류 검토) 및 발표심의(사업계획 설명)	심의위원 종합 논의를 통한 지원 시·군 및 공연콘텐츠 선정

○ (진행방법) ※ 심사 대상이 많을 경우 발표시간 조정 가능

- 사업 신청 공문 접수순으로 발표 진행
- 시·군별 총 25분 이내(PT발표 15분 + 질의응답 10분)
- 참석 인원 3명 이내(시·군 담당자 1명 및 수행단체 담당자 2명)

② 세부 심의 기준

○ (사전 행정검토 기준)

구분	연번	내용	배점
가감점	1	'25년도 종합평가 최우수·최저 시군-수행단체	±5점
	2	본 사업 선정 이력이 없는 시·군	+5점
결격사유 (심사배제)	1	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	
	2	필수 제출서류 미제출	
	3	제출서류 양식 미준수	

○ (전문가 심의 기준)

심사항목	심사지표	배점
합계		100
프로그램(30)	○ 지역의 정체성·독창성·참신성을 담아낸 공연 구성 - 공연의 예술적 수준 및 대중적 흡인력을 높일 수 있는 공연	10
	○ 공연 제작 의도 및 사업 효과 - 지역 적합성,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, 지속 가능성(지역 내 정착 가능성) 등	10
	○ 공연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도 -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, 달성 목표 및 수준의 적절성 등	10
공연장소(20)	○ 거리공연으로서의 적절성(접근성·편의성 등)	10
	○ 지역 명소화 및 관광 자원화 가능성	10
수행능력(20)	○ 사업 수행단체의 실행능력 - 수행단체의 전문성 및 예술적 역량, 수행단체의 공연 운영 경험 및 전문성 등	15
	○ 안전관리 및 위기 대응계획의 적정성	5
홍보(10)	○ 공연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·마케팅 전략의 적정성	10
예산수립(10)	○ 예산 편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- 제작비, 운영비 등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	10

6 추진 일정

구분	일정	내용
공고기간	2026. 2. 23.(월) ~ 3. 12.(목)	○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누리집 (www.jbct.or.kr → 지원·공모 → 사업공모)
접수기간	2026. 2. 26.(목) ~ 3. 12.(목) 18:00 까지	○ (시·군) 공문 접수 / (수행단체) 방문 접수 - (장소)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3층 예술회관운영팀 * 시군 및 수행단체 모두 기한 내 서류 제출 시 접수 완료
사전 행정검토	2026. 3. 16.(월) ~ 3. 17.(화)	○ 가감점 및 결격사유 확인 등
심의	2026. 3. 18.(수) (예정)	○ 전문가 심의(서면 및 PT 발표) * 일시 및 장소는 별도 안내
결과발표	2026. 3. 20.(금) (예정)	○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누리집 (www.jbct.or.kr → 지원·공모 → 사업공모)
간담회	2026. 3월 ~ 4월 초 (예정)	○ 2026년도 사업방향 및 종합평가 논의 등 재단-시군-수행단체 간 네트워크 진행
사업수행	2026. 3 ~ 12월	○ 선정 후 사업 수행절차 안내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7 예산 편성 안내

○ 예산편성 기본 원칙

구분	기본원칙
포괄적 예산 편성 지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비비, 잡비 등과 같이 사용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예산 편성 불가 각 예산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
용역·하도급 예산 편성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사업은 선정 공연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
사업관련 직접경비만 사용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, '보조금 집행 불가 항목'에 해당하는 항목은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
집행기준 및 방법 준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, 집행 전 증빙서류 구비가 가능한 지 사전 확인 필요
보조금 교부 이전 집행내역 불인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내역은 원칙적으로 인정 불가 ※ 재단이 사전 승인한 경우에 한해 예외 인정

○ 보조금 집행 가능 항목

항목	용도	비고	
일반수용비	사례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참여 예술인, 스태프, 보조아르바이트 등의 출연료, 연출료 등 모든 인건비 해당 대표자 사례비 총 사업비의 10% 이내 편성 -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획, 연출 등 직접적인 참여 활동에 대해서만 사례비 편성 가능 - 대표자가 국립·공립·시립 등 공공기관, 학교시설 등에 소속된 자로서 정년이 보장된 고용형태로 근로 중인 경우 대표자 사례비 지급 불가 - 지원신청 기준으로 인정(신규편성 불가) 	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는 '개인'과의 거래 해당 / 원천세 포함하여 편성	
	발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록, 서적 등 발간 	사업자 등록업체와 거래 필수, 개인 거래 불가
	홍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쇄물, 홍보물, 광고비 등(현수막, 리플릿, 포스터 등) 	
	재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	
	수선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무대, 세트 의상, 소품 등의 수선비 	
	제작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무대, 세트 조성 등 공연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	
임차료	대관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연장, 연습실, 부대시설 등 대관료 	
	임차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비, 소품, 악기, 물품 등의 임차료 이동 버스, 용달비 등 차량 임차료 - 통합퍼레이드 진행 시 체재비 별도 지급예정으로, 차량 임차료 편성 불가 	
복리후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술인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	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자체비용 처리가능	

○ 보조금 집행 불가 항목

사용불가 항목	용도
개인, 단체의 일상적 운영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공과금, 전화요금 등 일상 운영경비 •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,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독료 등 • 회의비(식비, 다과비), 주류, 담배 등(사용 시 환수조치) • 상금, 심사비 등
자산취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 종료 후에도 자본적 성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경비 예) 노트북, 모니터, 프로젝터, 그래픽카드, 음향 장비 등 • 임차 우선 진행 ※ 단,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성 물품은 보조금 인정이 가능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개별 가격 10만원 미만의 '소모성' 물품 ② 공연에 직접 사용된 물품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물품은 재료비로 간주하며,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함 - 정산 시 해당 물품을 사용하였다는 추가 증빙(사진)을 요청할 수 있음 (예시) 공연 의상, 대여가 불가능한 자료 등
행사 답사비 등 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통비(대중교통, 택시, 항공권 포함), 숙박비, 유류비, 주차료 등 ※ 단, 작품 운송과 관련된 운송비용 인정(거래명세서 필요)
기타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조금 수령자(단체대표자)가 거래업체 대표와 동일인일 경우 거래 불가 • 업무추진비 등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• 수수료 불가(문자서비스, 공동인증서 발급, 이체 수수료 등) • 세금/고용보험료 납부 시 발생한 가산세, 과태료 •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거래불가

○ 부가가치세 주의사항

부가가치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세사업자에 한하여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※ 향후 선정된 단체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일 경우, 지원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 환급금은 반납 또는 자체자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		
	구분	부가가치세 환급(공제) 대상	부가가치세 미환급(미공제) 대상
	선정자 유형	① 일반과세자 ②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원 이상인 자	①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원 미만인 자 ② 면세사업자 ③ 고유번호증 소지 단체
	보조금 사용여부	사후 환급/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	사후 환급/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보조금으로 정산 가능
	예산편성	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예산계획(교부) 작성	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예산계획(교부) 작성

8 유의사항

- 지원 신청 및 심의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금지하며, 적발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고 청탁을 시도한 개인 또는 단체는 향후 3년간 사업 신청이 제한됨
- 자부담 편성은 자율적으로 가능하나, 이에 따른 우대 혜택은 제공되지 않음
- 모든 사업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재정법」을 준수하며,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 과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 및 재단의 회계정산 기준을 따라야 함
- 사업 선정 후 주요 사업내용 변경이 불가하며, 사업 내용 또는 사업비 변동이 클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선정 이후 사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, 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특별한 사유 없이 포기 기간 이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사업 신청이 제한됨
- 회계 및 정산 교육,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 등 재단이 운영하는 필수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, 교육에서 안내된 지침을 준수해야 함
- 지원사업 수행 시 제3자로부터 예술활동을 노무로서 제공받는 경우,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(계약서 작성 필수) 예술인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함
※ 예술인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보조금 편성 가능
-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이 되더라도, 2026년도 교부신청 기한 내 미정산 사업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, 선정을 취소함
- 지원사업 관련 문의 응대 가능 시간은 월~금(09:00~12:00, 13:00~18:00)에 한함

9 기타사항

- 공문 및 이메일 접수 후 우선으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- 문의 : (재)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예술회관운영팀 ☎ 063-230-7495

※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“고객의 폭언, 폭행, 그 밖에 적정 범위에 벗어난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”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(전화연결 종료, 출입제한) 등을 할 수 있으며,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